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7일 07시 06분



# 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	3

##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

2014.04.17 조회수 581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39
담당부서	도시디자인과
조례	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4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등록사유	지방행정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13-05-03
규제시행/폐지일	2013-05-03
규제내용	제14조(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)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1.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(「자격기본법」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른 옥외광고·건축·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
등록후변동결과	○ 2012. 7.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38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44

# 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